

첨 부

협력기관 POOL 추가 모집 공고문

“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및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사업”을 수행할 협력기관을 추가로 모집 하오니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사업개요

- 목적 : 지식재산창출지원 및 창업촉진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 기관 POOL 구성
- 협력기관 POOL 유지기간 : 등록완료시점 ~ 2020. 12. 31
- 참여사업 :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및 지식재산기반창업촉진사업 內 보조금(국비 및 지방비 포함) 단가가 2천만원 이내의 사업

<협력기관 풀 대상 세부사업>

구분		세부사업명	자원규모	자원여부		입찰방식	
				글로벌	바로지원	협력기관풀	공개경쟁입찰
지식재산 창출지원 (글로벌 IP기업은 3년간 지원)	해외출원 비용지원	특허(PCT)	255만원 이내	○	○	○	
		특허(개별국)	670만원 이내	○		○	
		상 표 및 디자인	250만원 이내	○		○	
		디자인	280만원 이내	○		○	
	해외출원 OA, 등록지원	OA비용	220만원 이내	○		○	
		등록비용	350만원 이내	○		○	
	특허	특허맵(심화)	2000만원 이내	○		○	
		특허맵(일반)	1000만원 이내	○	○	○	
		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	900만원 이내	○	○	○	
	디자인	디자인맵(심화)	2000만원 이내	○		○	
		디자인맵(일반)	1000만원 이내	○	○	○	
		제품디자인 개발	1800만원 이내	○	○	○	
		제품디자인 목업	700만원 이내	○	○	○	
		화상디자인 개발	1200만원 이내	○	○	○	
		포장디자인 개발	1000만원 이내	○	○	○	
	브랜드	비영여권 브랜드 개발	3200만원 이내	○			○
		신규브랜드 개발	1600만원 이내	○	○	○	
		리뉴얼브랜드 개발	700만원 이내	○	○	○	
	기타	특허&디자인 융합 개발	3800만원 이내	○			○
		브랜드&디자인 융합 개발	2800만원 이내	○			○
		기업 IP경영 진단·구축	1500만원 이내		○	○	
창업촉진사업	IP나래	맞춤형 IP 컨설팅	1750만원 이내			○	

□ 모집분야

<협력기관 풀 구성 분야>

No	Pool 신청 분야		세부수행과제
1	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		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등
2	특허	기계·금속·건축 등	특허맵, 디자인맵, 글로벌IP경영진단 등
		전기·전자·정보통신 등	
		화학·바이오 등	
3	브랜 드		브랜드 개발 등
4	디 자 인		디자인 개발 등

※ 디자인맵의 경우 사업수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디자인분야에서도 선정가능

※ 협력기관은 분야별 중복신청 가능하나, 참여인력은 분야별 중복 참여는 제한

□ 자격기준

○ 기업기준 :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으로

분야별 최소 자격 기준 충족해야 함

※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

분 야	최소 자격 기준
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	상근 책임연구원 1명 이상, 상근 연구원 2명 이상 보유한 전문기관 (최소 3명 필)
특허	
브랜 드	
디 자 인	

○ 인력기준 : 관련 경력은 지식재산 또는 신청분야 관련 경력이며,

자격기준 최소 1개 이상 충족해야 함

분 야	책임연구원	연구원
특 허	· 학위 박사/석사/학사/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/5년/7년/9년 이상인 자 · 또는 <u>변리사 등록</u> 후 경력 3년 이상인 자 · 또는 디자인 분야의 경우 “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” 등록일 이후 경력 3년	· 학위 박사/석사/학사/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- /3년 /5년 /7년 이상인 자 · 또는 <u>변리사 등록한 자</u>
브랜드/ 홍보영상		· 학위 박사/석사/학사/전문학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- /3년 /5년/7년 이상인 자 · 또는 <u>변리사 등록한 자</u>
디자인		· 또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요령에 따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·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(한국디자인진흥원)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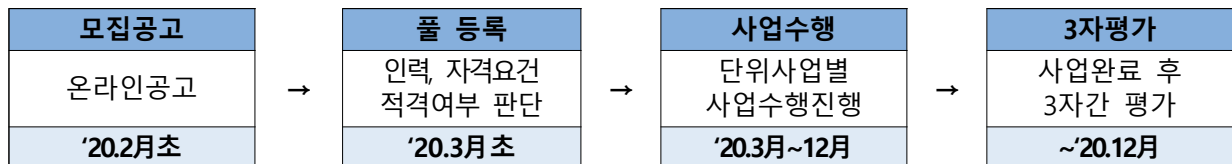
※ 경력 인정 : 건강보험득실확인서(재직증명서)를 통해 경력 전체 기간을 확인 가능하여야 함

※ 디자인 분야는 “산업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(참여인력 포함)” 제출 시 학력/경력 기준 면제

※ 변리사의 경우 변리사 “등록증” 을 통해 변리사임을 확인(자격증 X, 등록증 O)

□ 신청방법 및 일정

- 신청방법 : RIPC 사업수행지원 시스템 온라인신청
 - ※ RIPC 사업수행지원 시스템 : <https://rip.org/agency> (구글 크롬 접속 최적화)
- 신청기간 : '2020. 2. 3.(월) ~ 2. 14.(금) 17:00
- 선정발표 : '2020. 3. 2.(월)
 - ※ 신청접수건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운영프로세스



□ 제출서류

- 협력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RIPC사업수행지원 시스템 가입 후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해야 함

(1) 제안업체 기업현황

- (필수서류) 중소기업확인서, 회사소개서

※ 디자인 분야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필수(한국디자인진흥원 발급)

(2) 제안업체 일반현황

(3) 제안참여인력

- (필수서류)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, 경력증빙서류(**개별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**), 최종학력증명서, 변리사 **등록증**(변리사인 경우)

※ 경력 인정 기준일은 공고시작일 기준임

※ 최종학력증명서, 변리사 자격증만으로는 경력기간 인정 안 됨

※ 재직증명서로 경력증명서 대체 가능

※ 경력증빙서류는 해당 경력을 모두 산정할 수 있는 날짜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

※ 디자인분야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인력확인서(한국디자인진흥원) 필수

(4) 제안업체 유사사업실적

(5) 책임연구원 유사사업실적

(6) 보유장비 증빙서류(관련 SW, 구매계약서 등)

※ 제출서류는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(4대보험 및 개별건강보험득실확인의 경우 2월 이내)

※ 세부사항은 붙임3(협력기관 풀(Pool) 주요 불선정 사유(예시)) 참조

□ 기타 사항

-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
- 본 공고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
- 본 공고와 관련된 공지사향 및 안내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제안자의 책임으로 함
- 공고가 마감된 후 신청서 등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서류에 대한 보완 기간은 없으며, 적격여부로 협력기관 풀 등록 결정
- 신청기관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및 기관등록·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기관과의 계약(등록)은 무효사유에 해당하며, 3년간 해당 사업에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
- 협력기관 POOL 등록 후, 사업수행에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경우 협력기관 POOL에서 배제될 수 있음
-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
- 기존 협력기관이 분야를 달리하여 다른 분야의 협력기관POOL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서 및 필수서류는 반드시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함

□ 문의처

-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실 신수광 계장
- 전화 : 02-3459-2862, ripc@kipa.org
- 주소 : (06133)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(역삼동 647-9)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

붙임 : 1. 협력기관 풀(Pool) 주요 불선정 사유(예시)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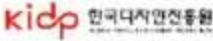
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전문인력

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115호) 제2조 ③항

③ "전문인력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.

1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(기능장)·기사 자격소지자
2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- 2의2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3.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. 다만,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에 한하며,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4.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5. 4년제 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- 5의2. 4년제 대학 일반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6.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7. 전문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- 7의2. 전문대학 일반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8. 특성화고등학교·특수목적고등학교·자율고등학교의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- 8의2. 특성화고등학교·특수목적고등학교·자율고등학교의 일반미술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- 8의3.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이상 자격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9.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
10. 국내·외 산업디자인관련 공모전(단, 전국 단위 이상의 공모전일 것)에서 10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11. 국내·외 산업디자인관련 공모전(단, 전국 단위 이상의 공모전일 것)에서 5회 이상 서로 다른 출품건으로 입선 이상을 수상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12.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10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

<관련샘플>



제 19- 호

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

· 업체명 : _____

· 사업자등록번호 : _____

· 신고번호 : 제 호

· 전문인력 현황

성명	생년월일	전문분야	등록일
		시각	20 - -
		시각	20 - -
		포장	20 - -
		포장	20 - -

상기와 같이 산업 디자인 전문회사 전문 인력이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2019년 월 일

한국디자인진흥원
 원 장 윤 주
 

- **필수 서류 미제출** : 중소기업확인서, 회사소개서,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, 경력증빙서류(경력증명서, 개별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)

※ 디자인 분야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확인서 포함

※ 경력증빙서류는 해당 경력을 모두 산정할 수 있는 날짜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

※ 시스템 상 업로드 절차 누락

- **경력미비** : 제출하신 개별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경력 합계가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경력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

※ 졸업증명서, 변리사 자격증 만으로는 경력기간 인정 안 됨.

(예시)

발급번호 : G2018- '97				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			
확인청구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김	89 -2*****		
자 격 득 실 확 인 내 역				
No	가입자구분	사업장명칭	자격취득일	자격상실일
1	직장가입자	특허법인	2017. .01	

- **제안참여인력** : 참여인력 미 입력 및 인원부족

(최소조건) 상근 책임연구원 1명 이상, 상근 연구원 2명 이상 보유한 전문기관

□ **협력기관 등록 이후 사업수행 제한사유**

<협력기관 풀(POOL) 사업수행 제한 기준>

참여율제한	금액제한	수행건수 제한
해당월에 수행인력의 참여율이 100%초과하는 경우	연간 분야별 수행금액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	연간 분야별* 수행건수 40건을 초과하는 경우

※ 참여율제한의 경우 참여율이 100%넘는 수행인력만 해당 월 과업수행을 제한하고,
그 외 제한되는 경우는 협력기관의 당해연도 사업제한

※ 분야 : 특허/브랜드/디자인/3D시뮬레이션으로 구분/IP나래는 특허분야에 속함

※ 수행금액 : 정부실지원금(국비+지방비)을 기준으로 산정